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0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정춘생 · 황운하 · 이해민
박은정 · 서왕진 · 차규근
김준형 · 김선민 · 신장식
백선희 · 강경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하여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유아나 노인 등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여 가

죽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중돌봄 부담 완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아울러 건강가정 조성을 위하여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그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 제25조 및 제32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중돌봄”이란 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제1항 중 “생활실태를”을 “생활실태 및 이중돌봄 현황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가족부양의 지원)”을 “(가족부양 및 이중돌봄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가정의 부양부담과 이중돌봄을 하는 가정의 돌봄부담”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3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이중돌봄”이란 <u>자녀·손자녀의 양육 또는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질병, 장애,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동시에 둘 이상 돌보는 것을 말한다.</u>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u>생활실태를</u>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 ----- <u>생활실태 및 이중돌봄 현황을</u> ----- ----- ----- ----- -----.
제25조(<u>가족부양의 지원</u>)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	제25조(<u>가족부양 및 이중돌봄에 대한 지원</u>) ① ----- -----

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u>가정에</u> <u>대하여</u> <u>부양부담</u>을 <u>완화</u>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u>가정의</u> <u>부양부담</u>과 <u>이중돌봄</u>을 하는 <u>가정의 돌봄부담</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이중돌봄에 필요한 교육</u> ③ (현행과 같음)
--	--